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42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 : 홍성국 · 강준현 · 김경만

박재호 · 신정훈 · 양기대

양정숙 • 윤준병 • 이개호

이광재 · 이용우 · 주철현

홍익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특정 청구인들에 의한 타인에 대한 욕설, 인신공격, 음담패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복적·고질적 심판청구등과 같은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하여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의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사건 처리도 지연되어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제6항, 제32조의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판청구의 형식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2항 중 "본문에"를 "본문 및 제2항 단서에"로, "제출되면"을 "제출된 경우"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를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경우라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주로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생 략)	등의 접수·처리)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② 심판청구의 형식이기는 하
	나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
	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심
	<u>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u>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답변
	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심판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
<u>②</u> ~ <u>⑥</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7}$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
의 접수·처리) ① (생 략)	의 접수·처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② <u>본문</u>
<u>에</u>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	<u>및 제2항 단서에</u>
변서가 <u>제출되면</u> 답변서 부본	<u>제출된 경</u>
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	<u> </u>

다.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u>심판청</u>
<u>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u> 보정
(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	32	조(날	현정)	1				심.	판.	청
	구/	서에	フ]ズ	H된	내	용이	명	확	하.	기
	<u>0}1</u>	니하	거나	심	판청]구기	}	적	법	하
	괴	아ા	니한	경우	-라.	<u> </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 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 구서에 주로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 른 답변서를 제출받지 아니하 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